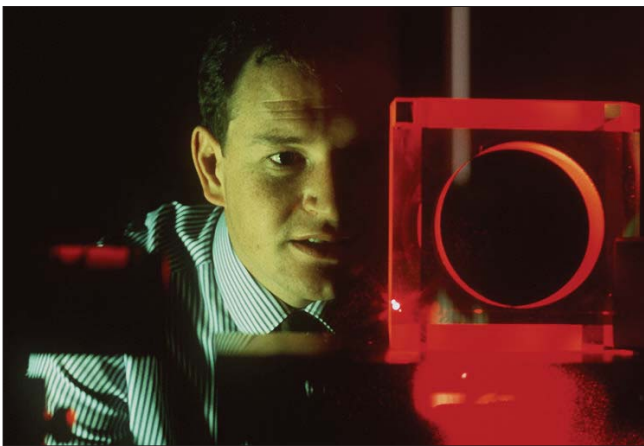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해외환경규제동향

'해외 환경규제동향'은 환경부와 전경련이 함께 운영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EU, RoHS 적용면제대상 결정에 갈팡질팡

- Deca-BDE 면제여부 유럽의회와 집행위간 마찰 -



경단체들의 반대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의 이 같은 행동은 RoHS 지침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이맘때 EU 집행위는 RoHS 부속서 규정에 따라 Deca-BDE는 규제

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브롬계 난연제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과 관련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31일 EU 집행위는 그동안 적용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deca-BDE에 대하여 적용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Deca-BDE는 PBDE(polybromodiphenyl ethers)라는 브롬계 난연제 중 하나로서 TV, 컴퓨터, 건축자재, 섬유, 자동차 실내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고 있다.

Deca-BDE에 대한 EU 집행위의 RoHS 적용면제 결정은 사실상 사용허가 결정으로서, 이에 대해 유럽최고환경과학패널과 여러 환

면제대상이라고 발표했다가 유럽의회가 이에 항의하자 잘못 발표한 것이라고 정정한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deca-BDE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 및 보건상 위해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기술적합위원회(TAC)에서도 이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이 늦추어져 왔다. 그 동안 TAC에서는 deca-BDE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영국의 주장에 대다수 회원국이 찬성해 온 가운데, 스웨덴과 핀란드만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금지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결론을 내지 못해 왔다.

지난 4월 19일 개최된 TAC 회원국 투표에서 비록 정족수 미달로 확정되지는 못했으나 과반수 이상이 deca-BDE를 규제대상에서 면제하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 관련내용 3면

VOL. 09
2005. 05. 02

헤드라인

1

◆ EU, RoHS 적용면제대상 결정에 갈팡질팡

해외동향

2

- ◆ 화학산업계의 반발 있더라도 REACH 추진은 기정사실
- ◆ EU, 바이오연료지침 목표 달성 힘들 듯
- ◆ 유럽의회, EU에코디자인지침 채택
- ◆ IPCC, 오존층과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특별보고서 채택
- ◆ JP모건케이스, 환경경영정책 발표
- ◆ EU, 청정선박을 향한 순조로운 항해
- ◆ 일본 디젤승용차 보급전망 보고서

스페셜 리포트

6

◆ 주요 EU회원국의 RoHS/WEEE 국내법 이행현황

주요단신

7

- ◆ 유럽의회, 타이어 PAHs 규제언기
- ◆ 유해물질 시험검사 국제표준안 6월 윤곽
- ◆ EU, 자동차의 재활용가능성 요건지침 제정에 1차 합의
- ◆ 미국 텍사스주 RoHS 규제안 공표
- ◆ 대만, 내년부터 과대포장 규제

관련 국제회의 정보

8



“화학산업계의 반발 있더라도 REACH 추진은 기정사실”

— EU환경장관, REACH 추진 재차 못 박아 —



지난 4월 4일 독일보수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기독교사회연합(CSU), 유럽의회 중도우파 연합그룹(EPP-ED)의 당수 연례회의에서 디마스 EU 환경장관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입법방향과 논의현황을 설명했다. 디마스 환경장관은 현재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서 크게 3가지 사항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첫번째는 화학물질로부터의 환경생태계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량 물질에 대해서도 정보 요구사항을 늘린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 주의의무 채택, 체내축적물질에 대한 우선관리,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체물질 사용 확대, 화학물질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 개선, 위험물질의 신속한 평가, 화학제품 품질관리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산업계의 부담경감 대책이다. 특정 물질군에 대해서는 보다 간단한 관리방법을 적용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해성에 근거해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기업비밀의 보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세번째는 철차의 간소화와 동물실험에 관한 것이다. 화학물질관리청의 역할 강화, 1개 물질 당 1회 등록, 동물실험 제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법방향에 대해 디마스 장관은 “EU의 제안은 사회·경제·환경적 관점을 종합하여 올바른 균형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REACH의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폭넓은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 단계에서 세가지 입법방향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화학산업계와 불필요한 문제로 재차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EU집행위의 제안은 ‘인체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수정의 여지가 있다 해도 이 균형을 무너뜨릴만한 현 법안의 대폭적인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출처 : EUCommission

세번째는 철차의 간소화와 동물실험에 관한 것이다. 화학물질관리청의 역할 강화, 1개 물질 당 1회 등록, 동물실험 제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법방향에 대해 디마스 장관은 “EU의 제안은 사회·경제·환경적 관점을 종합하여 올바른 균형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REACH의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폭넓은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 단계에서 세가지 입법방향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화학산업계와 불필요한 문제로 재차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EU집행위의 제안은 ‘인체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수정의 여지가 있다 해도 이 균형을 무너뜨릴만한 현 법안의 대폭적인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출처 : EUCommission



EU, 바이오연료지침 목표 달성 힘들 듯

EU 회원국들의 바이오연료지침(2003/30/EC) 국내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지침에서 정한 2005년 바이오 수송연료 사용률 2% 목표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바이오연료지침에서 규정한 회원국의 국내 입법화 시한이 2004년 말까지였으나, 3월 현재 덴마크, 리투아니아 등 6개국만이 국내법화를 완료했고, 벨기에, 이탈리아 등 5개국은 아직 도입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도입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이들 5개국과,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프랑스, 포르투갈 등 총 9개국에 대해 지난 3월 공식 경고서한을 보냈다.

2010년까지 농산물 및 유기폐기물 등에서 추출하는 바이오연료의 단계적 도입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이오연료지침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환경보호, 기후변화협약 의무준수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채택되었다.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수송부문 바이오연료의 시장점유율을 2005년 말까지 2%, 그리고 2010년 말까지 5.75% 이

상 달성해야 한다. 회원국은 2005년도 보급목표를 2004년 7월까지 발표해야 하며, EU 집행위는 2006년부터 매 2년마다 지침 이행현황을 평가해 추가 입법 필요여부를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덴마크,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기준치 이하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서, EU집행위가 그 타당성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지침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근거제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집행위는 예상보다 미흡한 회원국의 바이오연료 도입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바이오연료의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세계 우대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스웨덴 환경보호청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금감면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면서, 세금감면이 자국 내 바이오연료 생산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브라질 등으로부터의 에탄올 수입 증대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EU 차원의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출처 : EUCommission



유럽의회, EuP 에코디자인지침 채택

유 럽의회가 에너지사용제품 에코디자인지침(EuP 지침) 수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채택한 이번 수정지침은 주로 1차 독회 때 지적된 사항을 위주로 수정한 것으로 기본 틀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에너지사용 제품의 종합적인 친환경성 향상을 위한 지침은 역내 CO₂ 배출량의 약 40%가 제품소비시의 에너지 사용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들 품목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타 법률에서 규제되는 자동차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에너지 사용제품이 이 지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EU 집행위 제안서에 따르면 EuP 지침은 품목별로 에코디자인 요건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요건에 EU 역내판매되는 제품이 적합함을 증빙하는 수단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본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중 이번 수정안에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당 에코디자인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관할당국이 판매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이전에 요건 불이행 정도 및 판매수량에 따라 회원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제품의 시장 출시 이후 적절한 적합성 검증절차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건 불이행 제품의 판매에 대해 소급적으로 벌과금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에코디자인 보급 확대를 위해 간편한 제품전과정평가모델, 전과정 단계별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정보, 자원·에너지 소비저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

는 요건 등을 수록한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국이 중소기업 에코디자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제품의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전과정환경영향, 제품의 환경효율성, 에너지 절약방법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에코디자인 요건 및 적합성 검증방법 수립시 대기질 관리지침, 폐기물지침, OSPAR협약(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협약), 교토의정서 등 관련 EU 환경법률 및 국제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평가와 중소기업 영향 평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에코디자인 요건에 제품이 적합함을 증빙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EU 집행위와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을 인정하고 있다. 지침 부속서 VII에 자발적 협약의 최소적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합당한 자발적 에코디자인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제품은 일단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동 이행지침은 3년마다 채택하는 기술보고서에 따라 개정토록 하였으며, 개별품목별 에코디자인 요건을 제정하기 위해 제품 벤치마킹 및 평가를 담당할 독립전문가기구를 집행위 산하에 설립토록 하였다.

이번에 유럽의회가 EuP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향후 집행위가 의회 수정안에 따라 원안을 수정하고, 각료이사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게 되면 빠르면 올 여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EU Commission]

▶ 1면에 이어

또한 유럽난연제기업협회(EBERIP) 등 관련업계에서도 deca-BDE가 면제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Deca-BDE를 놓고 면제와 적용 그리고 유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관련 업계는 당국의 불명확한 입장으로 규제대응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3월 회의 전까지만 해도 2010년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안을 잡았던 EU 집행위는 또다시 '적용면제'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가뜰이나 RoHS/WEEE의 이행을 관장하는 EU

집행위의 독불장군식 태도에 대해 심기가 불편한 유럽의회를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유럽의회는 EU의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EU 집행위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4월 12일 채택하였으며, 집행위의 반성이 없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이어서 당분간 RoHS/WEEE 이행관련 적용면제대상 등 현안문제 해결이 예정보다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출처: EU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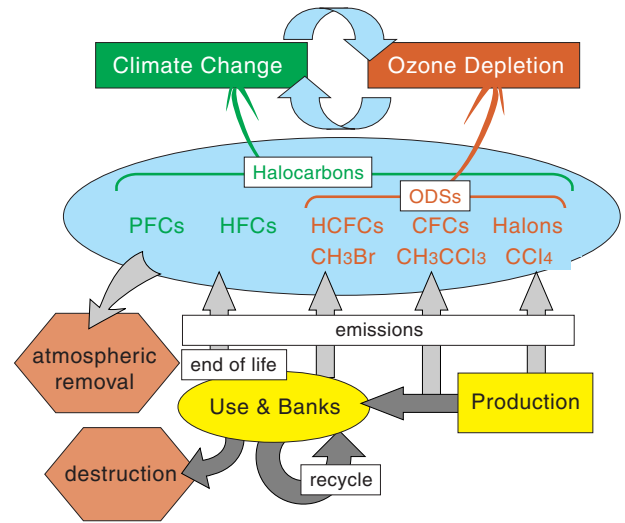
IPCC, 오존층과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특별보고서 채택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주관하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 회의가 지난 4월 6일부터 사흘간 개최되었다. 99개국 150여명의 대표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지구기후시스템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IPCC/TEAP 특별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이 특별보고서는 HFCs와 PFCs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들 물질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각각 1,300과 7,000인 온실가스로서 기후변화협약상 감축대상물질인 반면에, 오존층파괴지수(ODP)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 몬트리올의정서에서는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로 인정받아 현재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소화기, 용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오존층파괴 대체물질로서 인정받고 있으나 지구온난화 효과가 있는 물질들의 사용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평가하고, 기술적 가능성과 비용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성층권 오존파괴와 기후변화간의 과학적 연관성과 오존층파괴물질의 전폐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기후변화와 오존층파괴문제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한 물질규제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약 3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IPCC 워킹그룹과 몬트리올의정서의 기술경제평가패널(TEAP)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세계 35개국 145명의 전문가가 2년 동안 참여하여 완성되었다. 동 보고서는 올 여름 경에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출처 : WMO, UNEP]



▲ ODS 및 그 대체물질의 기후변화 상관도

JP모건체이스, 환경경영정책 선언

지난 4월 25일 미국계 종합금융서비스사 JP모건체이스는 자사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고도의 환경기준을 적용한 환경경영정책을 발표했다. JP모건체이스의 환경경영정책은 지난해 시티그룹과 아메리카은행이 선언한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민간금융부문에서 하나의 환경적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JP모건체는 이번에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가이드라인인 이퀘이터 원칙(Equator Principles)을 도입하였다. 이 원칙은 대형 인프라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할 때 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설정된 환경·사회기준 적합여부를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댐 건설, 탄광채굴 등 환경오염이 큰 사업에의 신용공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JP모건체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업분야의 1천만불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하여 이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 밖에도 JP모건체는 앞으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삼림, 주요 야생서식지 보호, 불법벌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로 하여금 온실가스배출 감축 계획뿐만 아니라 현 배출량 공개와 저감조치 계획수립 등을 촉진키로 했으며, 불법벌목 가능성이 많은 국가로부터의 목재를 수입, 가공무역을 할 경우 합법적인 목재임을 증명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책임실사(due diligence)과정에 환경위험관리를 통합시킨 새로운 금융경영정책의 하나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가 다국적 금융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JP Morgan Chase]



EU, 청정선박을 향한 순조로운 향해

4월 13일 유럽의회는 EU 집행위가 제출한 선박연료의 황(sulfur) 함량 규제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형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 내 황 함량을 2007년까지 1.5%로 감축하게 됐다. 또한 항구 내에서는 선박엔진을 끄고 연안의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은 호흡기 질병 및 생태계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 선박연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EU 선박 배출가스 감축전략에 의거하여 지난해 EU 집행위가 상정한 것이다. 최근 들어 유럽 내에서 자동차 등 육지에서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매년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반면, 해상 선박으로부터의 배출량은 증가해 왔다.

이 지침은 발트해(2006년 5월 이후)와 북해 및 해협(2007년 이후)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황 함량 1.5% 미만인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EU 역내에 정박하는 모든 대양선박 및 내륙선 연료에 대해서는 황 함량을 0.1% 미만(2010년부터)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선박연료의 평균 황 함량은 2.7%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요 골자는 지난해 집행위가 발표한 입법예고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나, 추가적으로 2008년까지 황 함량을 0.5%로 제한하는 중간 목표치를 도입하고, 이행시기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번 유럽의회의 찬성으로 해상선박연료지침 입법에 대한 EU 집행위와의 공동결정(co-decision) 절차는 공식 종료되며, 각료이사회의 최종채택만을 남기고 있다. 수개월 내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여러 기본지침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지침은, EU 관보에 게재되면 게재일로부터 20일 후 발효되고, 회원국에게 1년간의 국내법 입법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이 지침으로 선박연료의 저유황화 추세가 향후 SOx 배출권거래제도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EU Commission]



일본, 디젤승용차 보급 전망보고서

일 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18일 디젤 승용차의 지구 온난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청정디젤 승용차의 보급 및 향후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디젤 승용차가 동급 휘발유 승용차에 비해 연비가 20% 가량 우수하고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도 적은 장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유럽에서는 현재 신차 판매의 50% 가량을 디젤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NOx, PM 등을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규정하여 디젤차를 규제강화 대상차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디젤차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냉담하다. 일본은 2002년 기준으로 디젤 승용차의 신차판매비율이 0.1%로 매우 적으며, 특히 도쿄도에서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디젤차 반대 캠페인'을 전개해 '디젤 승용차를 타지도 구입하지도 팔지도 맙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디젤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심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최근 90년대 후반부터 기술혁신 등으로 성능향상과 배기가스 청정화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고성능 디젤 승용차의 보급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디젤 승용차 보급에 따라 운수부문 CO₂ 배출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와 함께 디젤 승용차를 보급 촉진하고자 할 경우 ① 배출가스 성능의 추가 개선 ② 디젤 승용차에 대한 이미지 개선 ③ 아이들링시의 소음문제 해결 ④ 디젤 승용차의 오토매틱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조제도나 세제상의 우대 등 지원조치, 정부 및 지자체의 출선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디젤 승용차에 대한 입장 변화가 최근 디젤 승용차 시판에 나선 우리 기업에게도 호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주요 EU회원국의 RoHS/WEEE 국내법 이행현황

프랑스

프랑스는 WEEE와 RoHS 지침을 반영한 WEEE 법령을 지난해 11월 25일 승인하였으며, 5월중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관계당국은 현재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준비중이다. 폐전기전자제품 수거는 생산자가 별도의 수거시스템을 설립하여 수거하거나 선택적으로 지자체가 수거하고 생산자가 이를 보상할 수 있다. 프랑스는 기존 폐제품이든 신제품이든 시판된 연도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생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는 반드시 연간 판매량과 재활용 실적을 중앙등록처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환경청(Ademe)이 직접 이를 주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프랑스의 Green Dot 제도를 운영해온 대형가전제품생산자협회, 가전폐기물 재활용사업체 SCRELEC와 정보통신부문 재활용사업체인 Alliance Tics 그리고 독일의 ERP가 이러한 등록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 · 오스트리아

독일은 RoHS/WEEE를 하나로 합친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회수, 친환경폐기에 관한 법률'(ElektroG)을 지난 3월 발효하였다. 이 법은 지자체에 지역수거를 맡도록 하고 등록관리기관(EAR)을 설립하여 올해 11월까지 모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수거·재활용실적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본지 8호 참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오스트리아도 新전기전자규정(EAG-Verordnung)과 폐기물관리법(AWG)을 올해 3월과 지난해 12월에 각각 개정·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는 2005년 5월 31일까지 연방환경청에 판매량 및 재활용실적을 등록해야 하며, 폐전자제품 전용 수거함 설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가정용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는 지역수거소를 통한다. 수거대상제품을 5종(대형제품, 냉각기구, 브라운관, 소형제품, 가스방출램프)으로 구별하였으며, 신제품구입시 구제품을 소매상에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는 별도 수거시스템을 설립하는 경우 지역수거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태리

이태리 환경부는 올해 1월 12일 WEEE/RoHS 국내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장관은 오는 5~6월경 최종 승인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중앙등록부령, 제정지원 및 표기령 등 하위 법령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태리는 세제혜택 및 재정보조를 받는 지방 수거센터가 소비자 및 소매상으로부터 수거하고, 생산자는 수거센터에 비용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생산자가 등록해야 하는 중앙등록처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하고 환경부가 관장하도록 했다. 이태리전기전자산업협회(ANIE)는 품목별로 컨소시엄 구축을 준비중이며 지난 3월 EcoR It 라는 자발적 컨소시엄이 처음 발족했다. 여기에는 이태리에서 활동중인 Brother, Canon, Epson, Toshiba 등이 참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04년 7월 전기전자기기법령(SAS/2004072357)을 채택하였으며, 2005년 1월 발효하였다. 이 법은 조명기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2005년 8월부터 발효하도록 하였다. 동 법은 지자체가 가정용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산자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생을 위한 시스템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폐제품을 전용수거하는 기존의 NVMP 시스템을 활용하여 폐제품을 수거하되, IT 제품과 사무기기와 관련해서는 ICT-Milieu라는 회수시스템을, 그리고 조명기기에 대해서는 Stichting Lightrec 회수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영국

WEEE 지침을 입법화한 규정이 올 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무역산업부는 RoHS 지침관련 규정에 대해 시기를 밝히지 않은 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공표한 규정에서 크게 수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와 관련해서 폐기물업체와 생산자가 설립한 단체(Gambica, Repic 등)가 법안 시행을 준비 중이다. 출처 : 영국 무역산업부 보고서]

유럽의회, 타이어 PAHs 규제, 2014년으로 연기

유럽의회는 자동차 타이어에 사용된 특정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을 제한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침안에서 규제 시기를 1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0일 유럽의회는 타이어에 사용된 신전유(extend oil) 내 PAHs 함량이 최대 허용기준인 10ppm을 초과하는 경우 2010년부터 역대 유통을 제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2009년부터 규제기로 한 당초 EU집행위의 안보다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의회는 또 2012년부터 해당 함량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경주용차량 타이어에 대해서도 당초안보다 2년 더 유예기간을 주어 2014년부터 시행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오래된 구형타이어 및 특별용도 타이어에 대해서도 유사한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페타이어를 재활용한 고무의 최대 PAHs 허용함량 기준 적용 조항을 추가하였다. [출처 : EU Commission]

전기전자제품 함유 유해물질 시험검사표준안 6월 윤곽

지난 3월 22일 개최된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기술위원회(TC) 111 분과회의에서 전기전자제품 내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국제표준 설정을 논의하였다. IEC/TC 111 분과회의는 EU의 RoHS/WEEE 지침, 미국 캘리포니아 폐전자제품 재활용법 및 중국판 RoHS/WEEE 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법률 제정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시험방법 국제표준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설치된 것이다. 시험분석방법에 대한 표준안 도출을 위해 분과내 워킹그룹을 구성키로 하고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오는 6월 초안(draft document)을 작성하기로 하였

으며, 올 연내에 6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표준설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출처 : IEC]

EU, 자동차 재활용성요건지침 제정에 1차 합의

유럽의회는 EU의 자동차 재활용가능성요건(recyclability requirements)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제1차 독회에서 합의했다. 이 지침은 자동차 메이커로 하여금 지난 2000년 제정된 폐차처리지침(ELV)상의 폐차 재활용 목표를 각 회원국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자동차 메이커가 자동차 제조시에 재활용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형식승인요건으로 한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법안 발효시점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출시되는 신차는 재활용가능성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 지침은 자동차 메이커가 최소한 85% 이상의 자동차 부품과 재료를 재사용가능(reusable)하거나 재활용가능한(recyclable) 것으로 제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타 부품 및 재료의 최소 2/3는 EU 폐기물법에 따라 재생가능한(recoverable) 것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출처 : EU Commission]

미국 텍사스 주 RoHS 규제안 공표

미국 텍사스 주는 EU의 RoHS/WEEE와 유사한 폐전자제품관리(Electronic Equipment Waste Management) 규제안을 발표했다. 동 규제안은 기존 텍사스 고형폐기물처리법을 개정하여 반영될 예정이다. 동 개정법안은 PC, AV기기, 통신기기, 게임기, 생활가전 등을 대상으로 2006년 9월부터 제조업자가 RoHS와 동일한 6대 유해물질 함유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제품 판매 후 1년 이내에 해체

정보 및 함유물질정보를 재활용업체에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폐기 및 재활용 이행계획서를 2006년 3월까지 텍사스 주 환경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08년부터는 6대 유해물질의 제품에 함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이와 유사한 입법을 하고 있는 주로는 캘리포니아가 있으며, 그밖에도 미네소타와 뉴저지가 도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미국 텍사스주]

대만, 내년부터 과대포장 규제

대만은 2006년부터 화장품, 과자류(사탕, 케이크, 빵 등), 가공식품, 주류 및 CD의 포장재 사용을 규제한다고 WTO에 통보했다. 대만의 과대포장규제법에 따르면 대상제품은 포장 공간비율(제품 내용물 대비 여유 포장공간)을 25%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포장횟수도 과자류와 CD는 3회 이하, 그 밖의 경우는 2회 이하로 제한하였다. 대만은 1단계로 과자류, 화장품, 주류에 대해서 2006년 7월부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자에게 포장검사를 위해서 무상으로 제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WTO]

內容物	草莓煉乳	巧克力花生
數量	16 包	16 包
整體商品包裝長度	長	385mm
	寬	300mm
	高	60mm
個別商品包裝長度	長	90mm
	寬	60mm
	高	16mm
包裝層數與材質	1	塑膠袋
	2	紙盒
	3	塑膠封膜
樣本圖片		

2005년 5월



◆ 발행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환경마크협회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 전 화 : 02-358-6800 (교환133)
 ◆ 팩 스 : 02-358-8561
 ◆ 이메일 : tomasyoon@kela.or.k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①	4	5	6 ②	7
8	9 ③	10	11	12 ④⑤	13	14
15	16 ⑥⑦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본지의 궁금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상기 환경마크협회내 TEN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지난호(Vol.8) 7면 deca-BDE 관련 주석중 "∼ 금지물질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로 정정합니다.

2005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⑧	2	3	4
5	6	7	8	9	10	11
12	13 ⑨	14 ⑩	15	16 ⑪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 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의 환경규제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및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운영에는 환경마크협회·KOTRA·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TEN의 온라인정보시스템 개설 설명회

- ▶ 일 시 : 5월 24일(화) 14시
- ▶ 장 소 :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후생동 지하1층)
- *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www.ten-info.com

관련 국제회의 정보

- ① 5.3~4 EnviroExpo & Conference 2005 (미국 보스턴)
- ② 5.6 항공기 기후변화영향 감소에 관한 공개 협의 (EU환경총국)
- ③ 5.9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에 관한 기본전략 인태넷협의 마감일 (EU환경총국)
- ④ 5.12 EU 살충제 지속가능사용에 관한 최종공개협의 마감일 (EU환경총국)
- ⑤ 5.12~13 환경책임지침 세미나 (벨기에 브뤼셀)
- ⑥ 5.16~18 Air Pollution 2005 (스페인 코르도바)
- ⑦ 5.16~27 유엔스름포럼 제5차회기 (미국 뉴욕)
- ⑧ 6.1~3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의
- ⑨ 6.13~15 2005 비즈니스와 지속가능성 컨퍼런스(미국, 뉴욕)
- ⑩ 6.14~16 CMM 2005 전시회 (영국, 페인턴)
- ⑪ 6.16~17 WTO 기술무역장벽위원회 회의

2005 친환경상품전시회

주최 : 환경마크협회·환경재단
 일시 : 2005.11. 8(화) ~ 12(토)
 장소 : 한국국제전시장(교양시)
 참가문의 : 02-358-6800(교환136)

